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고신대학교 의과대학(이하 의과대학)의 교육목표와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있어서 타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한 교육에 관한 것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 1 장 총 칙

제3조 (교육목표) 의과대학은 설립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교육목표를 두고, 매 2년마다 정기적인 평가를 한다.

제4조 (학습 성과)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학습 성과를 정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개정 2019년 3월 26일]

①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졸업 때까지 성취하여야 할 졸업성과를 둔다.

② 각 시기에는 졸업성과를 반영하는 시기별 학습 성과를 둔다.

③ 각 과정에는 시기별 학습 성과를 반영하는 과정 학습 성과를 둔다.

④ 각 수업에는 과정 학습 성과를 반영하는 수업 성과를 둔다.

제5조 (교육과정 편성) 교육목표와 학습 성과의 달성을 위해 교육과정을 다음의 시기별로 구분하고 자연과학, 의과학 · 기초의학, 임상의학, 근거중심의학, 의료인문학, 기독교신앙 분야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시기별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년 3월 26일]

① 예비의학 시기에는 기초 및 임상의학 학습을 위해 자연과학, 근거중심의학, 의료인문학, 기독교신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② 기초의학 시기에는 의과학 · 기초의학 통합교육과정, 근거중심의학, 의료인문학, 기독교신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③ 임상의학 시기에는 임상의학 통합교육과정, 임상수기, 문제바탕학습, 근거중심의학, 의

료인문학, 기독교신앙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④ 임상실습 시기에는 필수 임상실습, 특성화 실습, 학생인턴과정, 의료인문학 기독교신앙 등의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제6조 (교육과정 운영)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원리와 원칙에 근거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과정 운영 원리와 원칙의 세부 내용은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운영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년 3월 26일, 2021년 8월 31일]

①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의 기본 전략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성과바탕의학교육의 지향
2. 통합교육과정의 강화
3.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확대
4. 의학연구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 강화
5. 환자와 사회에 기여하는 의료인 양성을 위한 의료인문학 교육의 강화

② 의과대학은 교육과정의 기본 전략과 방향에 근거한 설계 및 편성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수학습법을 개발하고 교육 평가체제를 운영한다.

③ 의과대학 교수와 교직원이 교육과정의 설계와 실행, 그에 필요한 자원 활용 등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다.

④ 의과대학은 성별, 인종, 종교, 사회 경제적 지위 및 신체적 능력에 대해 차별이 없으며, 이러한 평등원칙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7조 (교육 담당 교원의 연수교육) 교육과정과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은 교육 관련 연수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① 교육 담당 교원은 연간 3시간 이상 의학교육 관련 연수교육 또는 교수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신임교원은 발령 후 1년 이내에 15시간 이상 신임교수를 위한 의학교육 관련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년 1월 6일]

제 2 장 예비의학 교육

제8조 (예비의학 교육의 목적) 예비의학 교육은 기초 및 임상의학 학습을 위한 포괄적인 교육과 인성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으로 구성하며 이에 따른 학습 성과의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년 3월 26일]

제9조 (예비의학 교육과정의 구성) 예비의학교육과정은 자연과학, 근거중심의학, 의료인문학, 기독교신앙 등의 분야로 구성한다. [개정 2019년 3월 26일]

제10조 (예비의학 과목·과정의 신설, 변경 및 폐지) 예비의학교육과정의 신설, 변경 및 폐지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의과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과대학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년 3월 26일]

제11조 (예비의학 과목·과정 책임교수) 예비의학 각 과목 · 과정은 1인의 책임교수의 책임 하에 운영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인 이상의 교수가 공동으로 담당할 수 있다. 책임교수는 의과대학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년 3월 26일]

제 3 장 기초의학 교육

제12조 (기초의학 교육의 목적) 기초의학 교육은 기초의학 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과 이에 따른 학습 성과의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년 3월 26일]

제13조 (기초의학 교육과정의 구성) 기초의학교육과정은 의과학, 기초의학, 근거중심의학, 의료인문학, 기독교신앙 등의 분야로 구성한다. [개정 2019년 3월 26일]

제14조 (기초의학 과목·통합과정의 신설, 변경 및 폐지) 기초의학 과목 · 통합과정의 신설, 변경 및 폐지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의과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과대학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년 3월 26일]

제15조 (기초의학 과목·통합과정 책임교수) 기초의학 각 과목 · 통합과정은 1인의 책임교수(코디네이터)를 두고, 1인 이상의 부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 책임교수 및 부책임교수는 의과대학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년 3월 26일]

제 4 장 임상의학 교육

제16조 (임상의학교육의 목적) 임상의학교육은 임상의학 분야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과 이에 따른 학습 성과의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년 3월 26일]

제17조 (임상의학교육과정의 구성) 임상의학교육과정은 기초의학, 임상의학, 근거중심의학, 의료인문학 등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통합교육과정 및 기독교신앙 등의 분야로 구성한다. [신설 2019년 3월 26일]

제18조 (임상의학 과목·통합과정의 신설, 변경 및 폐지) 임상의학 과목 · 통합과정의 신설, 변경 및 폐지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의과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과대학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년 3월 26일]

제19조 (임상의학 과목·통합과정 책임교수) 임상의학 과목 · 통합과정은 1인의 책임교수 (코디네이터)를 두고, 1인 이상의 부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 책임교수 및 부책임교수는 의과대학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9년 3월 26일]

제 5 장 임상실습

제20조 (임상실습의 목적) 임상실습은 일차의료에 필요한 필수적인 임상 지식과 술기, 태도 및 사회적 역량을 습득하도록 하는 교육과 이에 따른 학습 성과의 성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1조 (임상실습의 구성) 임상실습은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신과, 응급의학과 등 주요 임상과목 실습, 기타 임상과목 실습, 사회봉사, 서브인턴십 등의 필수실습과정, 해외교환실습, 선택심화실습, 자유선택실습을 포함한 특성화 실습과정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년 3월 26일]

제22조 (임상실습과정의 신설, 변경 및 폐지) 임상실습과정의 신설, 변경 및 폐지는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교육과정위원회를 거쳐 의과대학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과대학장이 결정한다.

제23조 (임상실습 담당교수) 각 임상실습과정은 해당 임상의학교실의 주임교수와 1인의 임상실습 담당교수가 운영한다. 임상실습 담당교수는 학장이 임면한다.

제24조 (임상실습 교육 및 훈련) 임상실습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원 외 의사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년 3월 26일]

제 6 장 사회봉사

제25조 (사회봉사교과의 목적) 사회봉사교과는 학칙 제 28조 제 1항에 의거하여 의과대학생의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학교의 설립이념을 구현하고자 함이다.

제26조 (사회봉사교과의 적용범위)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있어서 사회봉사교과에 관한 것은 이 지침에 의한다.

제27조 (사회봉사활동의 인정) 의과대학 학생은 사회봉사교과를 이수하기 위해 의과대학이 정한 범위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

1. 의예과 학생은 의학과 진급을 위하여 의예과 교육과정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4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활동의 범위는 사회봉사활동 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 (사회봉사교과 학습평가)

1. 의예과 학생은 2학년 12월말 전까지 사회봉사실적을 의과대학 교학관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습평가는 의예과 2학년 2학기 학년말 성적사정시 합격(pass, P) 또는 불합격(fail, F)으로 평가한다. 불합격(F) 대상자는 사회봉사활동 이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의학과 진급을 유보하며 휴학 처리한다. 단, 일반휴학 횟수에는 산입하지 않으며, 3회이상 유보시는 제적처리한다.

제 7 장 영어능력평가

제29조 (영어능력평가의 목적) 본 규정은 학칙 제 28조 제 1항에 의거하여 의과대학생의 실용영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이다.

제30조 (영어능력평가의 적용범위)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있어서 영어능력평가에 관한 것은 이 지침에 의한다. 영어능력평가란 공인 영어능력평가시험인 TOEIC, TOEFL(iBT) 혹은 TEPS를 말한다.

제31조 (영어능력평가시험의 인정) 의예과 학생이 의학과에 진급하기 위해서는 의예과 교육과정 중에 취득한 점수만을 인정한다. 영어능력평가 시험의 인정 기준은 영어능력평가 시행세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8. 31〉

제32조 (영어능력 학습평가)

1. 의예과 학생은 2학년 12월말 전까지 공인 영어능력평가 시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소정 성적 이상의 영어능력 시험 성적표를 의과대학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습평가는 의예과 2학년 2학기 학년말 성적 사정시 합격(pass, P) 또는 불합격(fail, F)으로 평가한다. 불합격(F) 대상자는 실용영어 성적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의학과 진급을 유보하며 휴학 처리한다. 단, 일반휴학 횟수에는 산입하지 않으며, 3회이상 유보시는 제적처리한다.

제 8 장 기본의학종합평가

제33조 (의학교육종합평가의 목적) 의학교육종합평가는 의과대학 교육평가를 목적으로 하며,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교육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함이다.

제34조 (의학교육종합평가의 적용범위) 의학교육종합평가란 기초의학종합평가 및 임상의학종합평가를 말한다.

제35조 (기초의학종합평가)

1. 기초의학종합평가는 의과대학생이 갖추어야 할 기초의학 기본지식 및 통합적 이해능력을 평가한다.

2. 기초의학종합평가는 의학과 1학년 대상으로 시행하며, 학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0년 9월 8일]

제36조 (임상의학종합평가)

1. 임상의학종합평가는 일차 진료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임상의학 필수지식 및 문제해결능력을 평가한다.

2. 임상의학종합평가는 의학과 3학년 및 4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학점을 부여한다.

제37조 (임상수행평가)

1. 임상수행평가는 일차 진료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임상의학 필수지식, 문제해결능력, 임상 술기 및 태도를 평가한다.

2. 임상수행평가는 의학과 3학년 및 4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며, 학점을 부여한다.

〈신설 2021. 8. 31〉

부 칙

1. 사회봉사교과 규정은 19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여 시행하기로 한다.
2. 사회봉사교과 개정규정은 2006년 11월1일부터 토익교과 규정은 2006년 11월 6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3. 사회봉사교과 및 토익교과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23일부터 시행하기로 한다.
4. 사회봉사교과 개정규정은 2009학년도 의예과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5. 이 개정규정은 2010년 8월 25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0.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11. 이 개정 지침은 2020년 9월 8일부터 시행한다.
12.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